

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50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22.  
발의자 : 서영교 · 전현희 · 민병덕  
박희승 · 양부남 · 복기왕  
임미애 · 윤준병 · 최혁진  
임오경 · 위성곤 의원  
(11인)

### 제안이유

현재 재외선거인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경우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음.

그런데 공관과의 물리적 거리나 투표방법 등의 제약으로 인해 재외 선거인의 투표환경은 열악한 상황으로, 특히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감염병을 사유로 일부 국가에서는 공관이 폐쇄되어 투표 자체를 할 수 없기도 하였음.

이에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의 재외거소투표를 도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및 참정권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가. 재외선거에서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을 앞당김(안 제49조제1항).

나.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재외거소투표 여부를 적도록 하고,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거소투표선거인명부 및 거소투표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도록 함(안 제218조의4 제2항제6호 및 제218조의5제2항제6호 신설, 제218조의8제2항 및 제218조의9제2항 신설).

다. 재외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기표식 투표용지를 작성하고, 선거일 전 16일까지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우선하여 재외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하되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(안 제218조의18제5항 및 제6항 신설).

라. 재외거소투표자는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(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)를 선택하여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우선하여 발송하도록 함(안 제218조의19제4항 신설).

마. 그 밖에 국내의 거소투표에 준하여 재외거소투표에 관한 사항을 보완·정비함(안 제218조의21제1항, 제218조의23제1항, 제218조의25 제4항 신설, 제242조제1항제2호 등).

#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국회의원의 선거: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0일부터 선거일까지
3.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: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

제49조제1항 중 “대통령선거”를 “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”로, “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”를 “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”로 한다.

제64조제2항 전단 중 “대통령선거”를 각각 “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”로, “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”를 “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”로 한다.

제218조의3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의2. 재외거소투표관리

- 1의2. 재외거소투표용지의 작성 및 발송

제218조의4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재외거소투표 여부(제218조의17에 따라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아니하고 제218조의19제4항에 따라 거소에서 재외거소투표를 하려는 경우를 말하며, 이하 제218조의5제2항제6호에서 같다)

제218조의5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# 6. 재외거소투표 여부

제218조의8제1항 전단 중 “선거일 전 40일까지 10일간”을 “선거일 전 45일까지 5일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재외선거인명부”를 “재외선거인명부(재외거소투표선거인명부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로 한다.

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8조의5제2항제6호에 따라 재외거소투표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재외거소투표선거인명부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.

제218조의9제1항 전단 중 “선거일 전 40일까지 10일간”을 “선거일 전 45일까지 5일간”으로, “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”를 “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(거소투표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구 · 시 · 군의 장은 제218조의4제2항제6호에 따라 재외거소투표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그 사실을 표시하고 거소투표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.

제218조의12제2호 중 “선거일 전 34일부터 선거일 전 30일까지”를 “선거일 전 39일부터 선거일 전 35일까지”로 한다.

제218조의13제1항 중 “30일”을 “35일”로 한다.

제218조의16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재외투표”를 “재외투표(재외거소투표를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다만, 재외거소투표자(재외거소투표선거인명부 또는 거소투표국외부 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거소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“○”표를 할 수 있다.

제218조의18제4항 후단 중 “제218조의16제1항”을 “제218조의16제1항 본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제9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외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할 투표용지는 재외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한다.

⑥ 재외투표관리관은 제5항에 따라 작성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바코드(재외거소투표의 접수에 필요한 재외거소투표자의 거소, 성명, 재외선거인명부등 등재번호 등이 기록되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)가 표시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 전 16일까지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우선하여 재외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우편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

⑦ 재외투표관리관은 투표방법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안내문과 본인

확인서약서를 재외거소투표용지와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.

⑧ 재외거소투표자에 관하여는 제15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.

이 경우 “거소투표자”는 “재외거소투표자”로, “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”는 “재외선거관리위원회”로, “읍·면·동선거관리위원회”는 “책임위원등”으로 본다.

제218조의19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재외거소투표자는 재외투표관리관으로부터 송부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(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)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우선하여 발송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외선거인은 제218조의5제4항에 따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사본 및 본인확인서약서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.

⑤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으로 송부된 재외거소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이를 재외거소투표함에 투입·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 재외투표기간 만료일의 투표마감 후 접수된 재외거소투표는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그 수를 계산한 다음 포장·봉인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

제218조의21제1항 본문 중 “투표함”을 “투표함(제218조의19제5항 본문에 따른 재외거소투표함을 포함한다. 이하 제218조의22제2항에서 같

다)"으로, "투표자수"를 "투표자수(제218조의19제5항 본문에 따른 재외거소투표자수를 포함한다. 이하 제218조의22제1항에서 같다)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재외투표를"을 "재외투표 및 제218조의19제5항에 따른 재외거소투표를"로 한다.

제218조의22제3항 중 "그 밖에"를 "재외거소투표용지의 발송 및 재외거소투표의 접수, 그 밖에"로 한다.

제218조의23제1항 중 "재외투표의"를 "재외투표(재외거소투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"로 한다.

제218조의25제1항 전단 중 "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제7호 · 제10호"를 "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제10호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재외거소투표자가 제218조의19제4항 후단에 따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사본 및 본인확인서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외거소투표를 무효로 한다.

제242조제1항제2호 중 "거소투표자"를 각각 "거소투표자 · 재외거소투표자"로, "거소투표에"를 "거소투표 · 재외거소투표에"로 한다.

제256조제3항제2호가목 중 "제218조의9제3항"을 "제218조의9제4항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3조(선거기간) ① · ② (생략)          ③ “선거기간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: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33조(선거기간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③ -----         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국회의원의 선거: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0일부터 선거일까지</u></p> <p>3. <u>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: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</u></p>
<p>제49조(후보자등록 등) ① 후보자의 등록은 <u>대통령선거</u>에서는 선거일 전 24일, <u>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</u>에서는 선거일 전 20일(이하 “<u>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</u>”이라 한다)부터 2일간(이하 “<u>후보자등록기간</u>”이라 한다)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⑯ (생략)</p>	<p>제49조(후보자등록 등) ① -----          ----- <u>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</u> ----- <u>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</u>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.</p> <p>② ~ ⑯ (현행과 같음)</p>



<p>구를 단위로 한다)을 지정하여 선거벽보의 제출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, 선거벽보를 첨부하지 아니할 지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지역을 지정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③ ~ ⑫ (생략)</p>	<p>③ ~ ⑫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18조의3(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) ①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</p>	<p>제218조의3(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1. · 2. (생략)</p>	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
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<u>2의2. 재외거소투표관리</u></p>
<p>3. ~ 6. (생략)</p>	<p>3. ~ 6. (현행과 같음)</p>
<p>② 재외투표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</p>	<p>② ----- -----.</p>
<p>1. (생략)</p>	<p>1. (현행과 같음)</p>
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<u>1의2. 재외거소투표용지의 작성 및 발송</u></p>
<p>2. ~ 5. (생략)</p>	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18조의4(국외부재자 신고) ① (생략)</p>	<p>제218조의4(국외부재자 신고) ① ----- (현행과 같음)</p>
<p>② 제1항에 따라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</p>	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

49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 
10일간 해당 선거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와 재외투표관리관이 송부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. 이 경우 같은 사람이 2 이상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중 가장 나중에 접수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.

## <신 설>

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 해당 선거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 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

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  
8조의5제2항제6호에 따라 재외  
거소투표가 있는 때에는 제1항  
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이  
를 표시하고 재외거소투표선거  
인명부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  
다.

3 \_\_\_\_\_

\_\_\_\_\_

\_\_\_\_\_

\_\_\_\_\_

\_\_\_\_\_



의 4제2항 제6호에 따라 재외거  
소투표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  
따른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 
그 사실을 표시하고 거소투표  
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따로  
작성하여야 한다.

## ② · ③ (생 략)

제218조의12(대통령의 궐위선거 및 재선거에서 기한 등의 단축) 제218조의4부터 제218조의 11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과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이 경우 재외 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위한 기간은 따로 두지 아니한다.

1. (생략)
2.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작성기  
각

선거일 전 34일부터 선거일  
전 30일까지

### 제218조의13(재외선거인명부등의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

선거일 전 39일부터 선거일  
전 35일까지

### 제218조의13(재외선거인명부등의

<p>확정과 송부) ① 재외선거인명부등은 선거일 전 <u>30일</u>에 확정되며,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해당 선거에 한정하여 효력을 가진다.</p>	<p>확정과 송부) ① ----- -----<u>35일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② ~ ④ (생 략)</p> <p>제218조의16(재외선거의 투표방법) ① 재외선거의 투표는 제159조 본문에 따른 기표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. &lt;단서 신설&gt;</p>	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18조의16(재외선거의 투표방법) ① ----- ----- -----.</p>
	<p><u>다만, 재외거소투표자(재외거소투표선거인명부 또는 거소투표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거소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“○”표를 할 수 있다.</u></p>
<p>② <u>재외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(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를 말한다)까지 관할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.</u></p>	<p>② <u>재외투표(재외거소투표를 포함한다)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.</p>
<p>③ · ④ (생 략)</p> <p>제218조의18(투표용지 작성 등)</p> <p>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은</p>	<p>③ ·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18조의18(투표용지 작성 등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</p>

투표용지 발급기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투표용지를 작성·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직으로 송부한 투표용지원고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·교부한다. 이 경우 제218조의16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선거의 투표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투표용지에 직접 적는 방법으로 한다.

## <신 설>

⑤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 
재외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할 투  
표용지는 재외투표관리관이 투  
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  
성한다.

⑥ 재외투표관리관은 제5항에 따라 작성된 투표용지의 일련 번호를 절취한 후 바코드(재외거소투표의 접수에 필요한 재외거소투표자의 거소, 성명, 재외선거인명부등 등재번호 등이 기록되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)가 표시된 회송용

### 〈진 설〉

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봉투  
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 전  
16일까지 배달 확인이 가능한  
우편을 우선하여 재외거소투표  
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. 이 경  
우 우편비용은 국가가 부담한  
다.

<신 설>

⑦ 재외투표관리관은 투표방법  
그 밖의 선거에 관한 안내문과  
본인확인서 약서를 재외거소투  
표용지와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 
한다.

<신 설>

⑧ 재외거소투표자에 관하여는  
제15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  
한다. 이 경우 “거소투표자”는  
“재외거소투표자”로, “구·시·  
군선거관리위원회”는 “재외선  
거관리위원회”로, “읍·면·동  
선거관리위원회”는 “책임위원  
등”으로 본다.

⑤ (생략)

제218조의19(재외선거의 투표 절차) ① ~ ③ (생략)

<신 설>

제218조의19(재외선거의 투표 절차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재외거소투표자는 재외투표  
관리관으로부터 송부받은 투표  
용지에 1명의 후보자(비례대표

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)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우선하여 발송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외선거인은 제218조의5제4항에 따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사본 및 본인확인서약서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.

### <신 설>

⑤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으로 송부된 재외거소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이를 재외거소투표함에 투입·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 재외투표기간 만료일의 투표마감 후 접수된 재외거소투표는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그 수를 계산한 다음 포장·봉인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

### ④ (생략)

제218조의21(재외투표의 회송) ①  
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은 매

⑥ (현행 제4항과 같음)

제218조의21(재외투표의 회송) ①

-----

<p>일의 재외투표 마감 후 투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<u>투표함</u>을 열고 <u>투표자수</u>를 계산한 다음 재외투표를 포장·봉인(封印)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18조의17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재외투표소는 공관과의 거리 등의 사유로 매일의 재외투표를 인계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재외투표소 운영기간 종료 후 그 기간 중의 재외투표를 일괄하여 인계할 수 있다.</p>	<p>----- -----<u>투표함(제218조의19제5항본문에 따른 재외거소투표함을 포함한다. 이하 제218조의22제2항에서 같다)</u> -----<u>투표자수(제218조의19제5항본문에 따른 재외거소투표자수를 포함한다. 이하 제218조의22제1항에서 같다)</u> -----.</p>
<p>② 재외투표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<u>재외투표</u>를 재외투표기간 만료일 후 지체 없이 국내로 회송하고, 외교부장관은 외교행낭의 봉함·봉인 상태를 확인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. 이 경우 재외투표의 수가 많은 때에는 재외투표기간 중 그 일부를 먼저 보낼 수 있다.</p>	<p>② ----- -----<u>재외투표 및 제218조의19제5항에 따른 재외거소투표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③ · ④ (생략) 제218조의22(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·송부) ① · ② (생</p>	<p>③ · ④ (현행과 같음) 제218조의22(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·송부) ① · ② (현행</p>

<p>략)</p> <p>③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 관리록을 비치하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의 접수 및 처리, 재외투표소 설치 · 운영, 그 밖에 재외선거 및 국외부재자투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.</p>	<p>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재외거소투표용지의 발송 및 재외거소투표의 접수, 그 밖에-----.</p>
<p>④ (생 략)</p> <p>제218조의23(재외투표의 접수) ①</p> <p>구 · 시 · 군 선거 관리 위원회는 선거일 전 10일부터 <u>재외투표</u>의 투입과 보관을 위하여 국외부재자 투표함과 재외선거인 투표함(이하 이 조와 제218조의24에서 “재외투표함”이라 한다)을 각각 갖추어 놓아야 한다.</p>	<p>제218조의23(재외투표의 접수) ①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재외투표</p> <p>(재외거소투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
<p>② (생 략)</p> <p>제218조의25(재외투표의 효력) ①</p> <p>재외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179조(<u>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7호 · 제10호</u>는 제외한다)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사전투표 및 거소투표”는 “재외투표”로, “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18조의25(재외투표의 효력) ①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같은 조 제3항 및 제4</p> <p>항 제10호-----</p> <p>-----.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<p>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”는 “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”로, “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”는 “재외선거인등이”로, “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”는 “재외투표”로 본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② · ③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</p>	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재외거소투표자가 제218조의19제4항 후단에 따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사본 및 본인확인서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외거소투표를 무효로 한다.</u></p>
<p>제242조(투표 · 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</p>	<p>제242조(투표 · 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) ① ----- ----- -----.</p>
<p>1. (생략) 2. 정당한 사유 없이 <u>거소투표</u>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, <u>거소투표자</u>의 투표를 공개하거나 하게 하는 등 <u>거소투표에</u>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</p>	<p>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거소투표</u>자 · <u>재외거소투표자</u> ----- ----- <u>거소투표자</u> · <u>재외거소투표자</u> ----- ----- <u>거소투표</u> · <u>재외거소투표에</u> ----- -----</p>
<p>② · ③ (생략) 제256조(각종제한규정위반죄) ①</p>	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제256조(각종제한규정위반죄) ①</p>

<p>• ② (생 략)</p> <p>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選舉秩序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</p> <p>가. 제39조제8항(<u>제218조의9 제3항</u>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舉人名簿作成事務를 방해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者</p> <p>나. ~ 아. (생 략)</p> <p>3. · 4. (생 략)</p> <p>④ · ⑤ (생 략)</p>	<p>•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가. ----- <u>제218조의9 제4항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나. ~ 아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·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· ⑤ (현행과 같음)</p>
--	--